



## 보조 프로그램 설명서 (The Assistance Program)

연금국은 미국 장로교 혜택 플랜을 관장하며, 미국 장로교단 관련 기관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자격이 되는 가입자들에게 은퇴, 의료, 사망, 그리고 장애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연금국은 보조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정적, 그리고 직업상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 설명서는 연금국이 제공하는 플랜과 프로그램, 서비스의 주요 사항을 요약합니다.

### 보조 프로그램에 관하여 (About the Assistance Program)

연금국 보조 프로그램은 미국 장로교 목회자들과 직원들의 삶의 여러 단계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를 위하여 만들어진 여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목회자들이 목회의 온전성을 추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 장로교 혜택 플랜을 보충합니다. 또, 이 보조 프로그램들은 목회자와 가족들이 재정적 도움이 필요할 때, 즉, 개인적인 재원과 기타 후원 수단을 모두 동원해도 안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중요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보조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는 아래와 같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 수입 보조금과 주택비 보조금을 통하여 은퇴한 목회자들의 재정적 그리고 주택비 보조,
- 공동 보조금, 응급 보조금, 입양 보조금, 대학 신입생 보조금, 목회자 교육비 부채 보조금, 안식년 보조금 등을 통하여 현재 근무하는 목회자들의 재정적, 직업적 필요를 후원합니다.

보조 프로그램의 주요 수입원은 선물, 유산, endowments 에서 나오는 수입, Christmas Joy Offering 의 절반 등이며, 고용기관이 지불하는 혜택 플랜 부담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 선물의 전액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연금국은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 비용을 오랜 기간 쌓여온 기부금을 통하여 사용합니다.

보조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보조금을 신청하기를 원하면, 800-773-7752 (800-PRESPLAN)으로 전화하거나 [pensions.org](http://pensions.org) 를 방문하십시오.

## 은퇴한 목회자들의 재정적 그리고 주택비 보조 (Retired Church Workers: Financial and Housing Needs)

수입 보조금은 (Income Supplement) 65 세나 그 이상인 은퇴한 목회자들이나 혼자된 배우자들의 총 수입이 연금국이 정한 그 해 최소 생활비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수입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2018 년 최대 수입 보조금 표는 보조 프로그램 - 수입 보조금 설명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비 보조금은 (Housing Supplements) 65 세나 그 이상인 은퇴한 목회자들과 혼자된 배우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혹은 은퇴 주택단지에서 살 수 있도록 재정적인 보조를 합니다.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주택비 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대 수입은 연 \$42,640 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상주하는 생활 환경일 때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최대 수입은 연 \$60,910 입니다. 이 외에 적용되는 주택비 가이드 라인 규정이 더 있습니다.

## 현재 근무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재정적 그리고 직업상 보조금 (Church Workers: Financial and Vocational Needs)

공동 보조금 (Shared Grant) 은 한 번에 한하여 보조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근무 중이거나 은퇴한 목회자와 배우자가 특수한 재정적인 필요가 있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의료비가 발생했거나, 가족들의 응급 상황, 집에서의 간호 등 혜택 플랜과 보험이 지불하지 않는 특수 상황들이 포함됩니다.

공동 보조금은 연금국과 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부담하기를 원하는 노회나 대회, 혹은 고용기관이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조금이 일 년동안 매월 지불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의 필요와 자원 상황에 따라 각 케이스가 검토될 것입니다.

응급 보조금 (Emergency Assistance Grants) 은 공동 보조금을 위한 자원이 없을 경우 연금국이 한 번에 한해 보조하는 기금입니다. 노회나 대회 혹은 고용기관이 보통 기금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양 보조금은 (Adoption Assistance Grants) 의료 플랜에 등록해 있는 가입자가 자녀를 입양한 후 자신의 의료 플랜에 포함시켰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가 21 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시불로 지불되는 \$3,000 은 입양에 관련된 비용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지불됩니다. 이 보조금은 보조 프로그램에 들어온 선물과 relief of conscience fund 로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학 신입생 보조금**은 (Transition-to-College Assistance Grants) 가입자와 자녀가 연금국 의료 혜택 플랜에 등록되어 있고, 그 자녀가 인가받은 대학교에 full-time 신입생이 된 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가족의 조정된 총수입이 미국 장로교 목회자들의 중간 급여의 두 배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지불되는 이 보조금은 컴퓨터나 기숙사 가구 같은 비용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목회자 교육비 부채 보조금**은 (Minister Educational Debt Assistance Grants)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한지 첫 6년 미만인 목회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목회자가 혜택 플랜의 Pastor's Participation 에 등록되어 있고, 연간 실제 급여가 미국 장로교 목회자들의 중간 급여보다 낮아야 합니다. (2018년에 \$58,000) 자격이 되는 목회자는 Board University 의 교육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이 보조금은 일 년에 \$2,500 씩 4년에 걸쳐 총 \$10,000 로 목회자들의 교육비 부채 상황을 (학부와 대학원 과정 포함) 돕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안식년 보조금**은 (Sabbath Sabbatical Support Grants) 교인수가 200명 이하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과도한 목회 업무에서 벗어나 개인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3,000 이 보조되는 이 기금은 받을 수 있는 목회자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미국 장로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현재 교회에서 적어도 6년 이상 시무해 왔고, 혜택 플랜에 Pastor's Participation 에 등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보조금은 교회, 재단, 노회나 대회, 혹은 다른 곳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을 보조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교회 목회를 직접적으로 후원하는 다른 직책에 있는 목회자들도 노회를 통하여 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Church Worker* 는 미국 장로교가 직접 관할하는 교회, 노회나 대회, 기관, 기타 고용기관에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어 있던 (은퇴했거나 목회지를 옮기는 사이) 개개인을 말합니다.